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237호
나. 발 의 자 : 김형재 의원
다. 발의일자 : 2024년 10월 16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10월 18일

2. 제안이유

-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라 지식정보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나 정보의 디지털화, 무인화 등으로 인해 지식정보 취약계층은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서울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증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는 서울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서울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함(안 제5조제1항).
나. 서울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제3호).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옥심)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시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서울시 도서관 정책이 국가 정책과의 연계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중 ‘도서관의 외국어자료 서비스 강화에 관한 사항’을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여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나. 시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 명시(안 제5조제1항)

- 현행 조례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독서문화 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서관법」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국가 종합계획”)1)에 기초하여 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각종 도서관 정책 및 사업을 편성·운영하고 있음.

1)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제1차(2009~2013년), 제2차(2014~2018년), 제3차(2019~2023년), 제4차(2024~2028년)에 걸쳐 총 4회 수립되었음.

< 시 종합계획 수립 현황 >

구 분	기 간	목 표
제1차	2012~2018년도	책 읽는 서울
제2차	2018~2022년도	지식문화도시 서울
제3차	2024~2028년도(수립 중)	-

- 다만, 동 조례는 2008년 제정된 후 현재까지 수차례 개정되어 왔음에도 시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기하지 않아 매 차수별로 기간이 상이하거나 공백 기간이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남.
- 「도서관법」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5년마다 국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국가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시·도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도서관법」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 「도서관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가 종합계획에 기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도서관 정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통일성과 연동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현행 조례가 국가 종합계획에 기초하도록 규정한 점과 더불어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시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규정하되, 동 개정안이 제안한 바와 같이 상위법령과 동일한 5년으로 정하여 도서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다.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증진(안 제5조제1항제3호)

-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은 각 호로써 도서관 정책 목표 등 총 5개 사항을 포함하여 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5조(시 종합계획 및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4조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서관 정책 목표
2. 도서관 운영 현황
- 3. 도서관의 외국어자료 서비스 강화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발전 방향과 추진 방법
5. 그 밖에 도서관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이 중 제3호 ‘도서관의 외국어자료 서비스 강화에 관한 사항’은 2014년에 추가된 내용으로서 경제적 소득격차 및 지역별 교육 인프라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국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인재양성에 있어 균등한 기회부여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개정되었음.
- 다만, 「도서관법」은 도서관을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교양습득·학습활동·조사연구·평생학습·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을 뿐,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도서관은 외국어 장서의 보유량을 늘리는 것 외에 외국어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기에는 현행법상 근거가 불충분한 측면이 있으며,

도서관 서비스 확대의 실효성은 도서관 이용자의 적극성을 기반으로 산출되는 결과물인 만큼 도서관이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에서는 필연적으로 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음.

○ 2009년부터 수립된 국가 종합계획은 그동안 정책 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양적인 증가에서 사회문제 대응으로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의 초점이 변화되어 온바, 시 종합계획의 내용에 있어서도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제1차~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개요 >			
제1차(2009~2013)	제2차(2014~2018)	제3차(2019~2023)	제4차(2024~2028)
·도서관 인프라 확충	·도서관 서비스 질 향상	·도서관 가치 정립	·도서관의 역할 확장
·도서관 시설 및 자료 지속적 확충 중심 (도서관 건립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도서관 서비스 제공 (시설·자료·인력 등)	·개별도서관의 창의적 서비스 발굴 유도 <small>*사람에 대한 포용성, 공간의 혁신성, 정보의 민주성</small>	· 삶의 공간으로 도서관 서비스 확장 <small>*따뜻한 동행 공동체 성장 지속가능한 미래</small>
·관중별 과제 중심 - 8대 추진전략, 29개 중점과제, 71개 추진과제	·관중별 과제 중심 - 3대 정책목표, 7대 추진전략, 92개 추진과제	·관중별 과제 최소화 - 4대 전략방향(목표), 13개 핵심과제, 36개 추진과제	·정책기관별 과제 중심 (중앙 23, 시도 17) - 4대 정책목표, 24개 추진과제, 51개 실행계획
·도서관 중심의 계획 - 도서관진흥을 위한 방향 제시	·도서관 중심의 계획 - 도서관서비스 선진국 목표로 도서관 기반 확충 및 운영 내실화	·수요자 중심의 계획 - 개인 공동체, 사회의 성장을 지원 도서관 서비스 제시	·정책 중심의 계획 (국정과제 등 연계) - 국정기조 구현을 위한 도서관정책 방향 제시
· ~ '12년 공공도서관 - 도서관 수 828개관 - 관당 인구수 6.1만명	· ~ '17년 공공도서관 - 도서관 수 1,042개관 - 관당 인구수 4.9만명	· ~ '22년 공공도서관 - 도서관 수 1,236개관 - 관당 인구수 4.2만명	· ~ '28년 공공도서관 - 도서관 수 1,400개관 - 관당 인구수 3.7만명

- 또한, 「도서관법」은 국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도서관법」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도서관의 역할강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나.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 다. 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라. 그 밖에 도서관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주요 추진과제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 이에 동 개정안은 ‘도서관의 외국어자료 서비스 강화에 관한 사항’을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여 내용상 국가 종합계획에 부합하도록 하고,

지식정보의 중요성이 커진 시대적 환경에 맞추어 서울시가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 현행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조의2에서도 각각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정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개정안은 상위 법령과 현행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체계상·내용상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지식정보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마. 65세 이상의 사람

바. 문자해독이 어려운 사람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의2(지식정보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지식정보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지식정보격차 해소 등 독서 문화 활동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도서관에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자료제작·구입, 시설개선, 기기구입 등을 위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2(이재민) 제3호 가목, 나목, 제4호 가목에 따른 재난 이재민의 심리회복을 위한 도서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으로 주거시설의 상실·침수 등 피해를 입은 자

2.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주거시설로부터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자

3.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주거시설로부터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자의 동거 가족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서지원 시 이재민 도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예산, 지원대상 및 지원도서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의안번호
2237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김형재 의원		2024.10.1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p>〈개정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증진 내용을 포함하여 사회 불평등 해소 <p>〈주요 입법 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함(안 제5조제1항). ○ 서울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포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추진경과	○ '24. 10. 16.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부 서 검토의견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市 도서관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성격과 국가 법정 기본계획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시행계획 성격을 포함하므로 국가계획과 시 계획의 수립시기 연동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도서관법과 현행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서 지식정보 취약계층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내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것이 타당 					
대응방안	○ 이견 없음					
상 임 위 처리결과						
향후계획						
담당부서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팀장	김지혜(☎2133-0220)	담당	박상미(☎2133-0223)	